

교원업적평가 규정

[전면개정 : 2023년 2월 28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교원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및 봉사 영역에 대한 업적을 공정히 평가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 연구, 산학협력, 창작활동 등을 장려하고 나아가 교육목적에 입각하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평가 대상은 전임교원으로 한다.

제3조(평가의 기본원칙) 평가는 교원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전공의 특수성에 따라 기준을 세분화하되 정량적인 측면과 정성적인 측면을 겸해서 평가한다.

제4조(평가영역과 정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정의된 교육·연구·봉사·산학협력영역으로 시행한다.

1. 교육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수(수업, 실습 및 실기)와 교내외를 통한 학생지도 등 제반 교육 활동을 의미한다.
2. 연구는 해당 전공과 연관된 모든 형태의 연구 및 창작활동을 의미한다.
3. 봉사는 연구 및 창작활동 결과에 따라 수상실적과 지식 및 경험을 교내외에 제공·기여하는 활동 등을 의미한다.
4. 산학협력은 대학(또는 산학협력단)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상호협력하여 행하는 인력양성, 연구개발, 자문, 수익사업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제5조(영역별 평가요소) ① 교육영역은 강의와 학생지도 및 교원개발 성과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연구영역은 논문·저서 등을 비롯한 제반 연구 활동의 성과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③ 봉사영역은 교내외 봉사 업적 및 학과(부서), 대학발전 기여실적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④ 산학협력영역은 산학연계 인력양성, 외부연구비 수주, 특허, 산학협력관련 사업 유치 또는 운영 등의 성과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평가방법) 평가영역별 세부항목 및 배점은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① 업적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영역별 업적평가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교육봉사업적평가위원회
2. 연구업적평가위원회
3. 산학협력업적평가위원회

- ② 평가영역별 업적평가위원회의 구성은 해당 계열의 교원 중에서 전공 및 직급을 고려하여 7~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교육봉사업적평가위원회 및 연구업적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지정하여 임명한다. 산학협력업적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이 가능하다.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가. 평가대상 교원의 업적에 대한 심의 및 평가
 - 나. 평가대상 교원의 관련 실적 추가 제출과 보완 요청
- ⑥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 ⑦ 위원 본인이 평가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평가절차) ① 평가영역별 업적평가 위원회는 매 학기 종료 후 직전 학기의 업적에 대한 심사 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 교원들은 지정된 시기 안에 지난 학기 업적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각 업적평가위원회는 교원들이 입력한 업적에 대해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심의하고, 그 평가결과를 교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 청구 및 확정) ① 업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업적평가위원회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해당 업적평가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바로 통보한다.

③ 영역별 업적평가위원회는 업적평가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평가결과의 활용)

- ① 교원업적평가결과는 교원의 재임용(재계약),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연구비 지급, 연구년 교원 선정 및 급여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② 교원업적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교원에게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비밀유지) 업적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관련서류는 대외비로 관리되며 업무 관련자 이외의 사람에게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업무분장) 교원업적평가와 관련된 업무는 교무팀에서 관장하되 평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 지원한다.

제13조(허위 업적)

- ① 허위 또는 인위적인 조작에 의한 업적 제출 시, 해당 업적은 0점 처리하고 허위업적에 의한 재임용, 승진, 3년단위 평가, 연봉평가 등의 인사조치는 무효화되며 징계조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